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지정조건 변경)

지정번호	2023-19-2호	지정연월일 (지정조건 반영일)	2023년 9월 27일(2024년 5월 13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6-82-0094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자 김춘진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주요내용)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물류형식(선물류, 후거래)에서 선거래, 후물류의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판·구매자가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례내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온라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2년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실증범위) 청과류, 축산물, 양곡류,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참여주체들이 거래상대방, 거래장소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전국 단위로 거래<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거래부류 확대(변경) 필요 시 관계부처 협의 후 진행 <p>※ 실증 거래참여자 : 산지조직(APC 농업법인 등), 도매시장 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등</p>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3.10.04.~2025.10.03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판·구매자가 참여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2. 이용자 유의사항

- (지역) 전국 어디서든 거래주체 간 거래
- (이용주체) 농산물 도매거래 사업자 간 거래
 - * 단, 농산물의 안정적인 거래 확보를 위해 각 거래주체는 각각 “온라인 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승인 받아야 함
- (품목) 청과부류, 축산부류 및 양곡부류 중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품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별도 정책 수립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총보상한도 5억원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총보상한도 없음
- 전자상거래배상책임보험 가입, 총보상한도 20억원
- 이의 및 민원 처리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4.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 없음